

「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경제체육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경제체육과장 한왕기)

-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 및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9조, 제21조”를 “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“기본지원사업”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제2조제4호 중 “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”를 “시행령 제19조제4항 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